

디자인보호법기출문제집(2판) 정오표_202512

진도별 기출 8

정답을 ②로 수정

진도별 기출 18

지문 ③을 아래와 같이 수정

③ 출원서 및 도면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 또는 그 물품의 부분을 기재할 수 있다.

해설 ①③을 아래와 같이 수정

①③ 물품의 부분은 원칙적으로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지만, 커피잔의 손잡이, 병의 주둥이, 안경테의 귀걸이부 등과 같은 물품의 부분도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받을 수 있게 하였다.(제2조 제1호 괄호) 부분디자인에 관한 출원서 및 도면에 기재하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 또는 물품의 부분에 관한 명칭을 기재할 수 있다.(제40조 제2항)

진도별 기출 19

지문 ①을 아래와 같이 수정

① 원칙적으로 부분디자인과 전체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디자인보호법 제46조(선출원)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인가의 여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.

진도별 기출 20

지문 ③을 아래와 같이 수정

③ 최초 디자인등록출원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으로 도면에 표현한 것을 등록받지 않고자 하는 부분으로 도면을 보정하는 것이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.

해설 ③을 아래와 같이 수정

③ 최초 디자인등록출원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과 등록받지 않고자 하는 부분을 착오로 잘못 표현한 것이 명백한 경우, 이를 바로잡기 위한 보정은 요지변경이 아니다.

해설 ④를 아래와 같이 수정

④ 원칙적으로 전체디자인과 부분디자인은 유사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, 부분디자인이 실질적으로 전체디자인과 같을 경우 선출원주의 위반 여부에 관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(46조), 선출원이 전체디자인이고, 후출원이 부분디자인인 경우 그 부분디자인이 선출원 전체디자인의 일부와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(33조 3항).

진도별 기출 21

지문 ④을 아래와 같이 수정

④ 형태적 일체성을 판단함에 있어 디자인의 설명, ~~창작내용의~~ **요점**에 기재된 내용이나 출원서 및 도면에 의한 디자인의 특징을 통해 창작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.

진도별 기출 25

지문 ④을 아래와 같이 수정

④ 글자체의 도면은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지정글자, 보기문장, 대표글자도면을 작성해 **제출할 수 있으며, 이 때** 동 규칙에서 정한 방식으로 도시되지 아니한 경우 부적절한 서류로 보아 반려사유에 해당한다.

진도별 기출 54

해설 ⑤을 아래와 같이 수정

⑤ 신규성 상실의 예외 요건을 만족할 경우, **기본디자인의 등록 후 관련디자인의 등록** 등과 같은 예외가 있다(제36조 참고).

진도별 기출 54

해설 ③을 아래와 같이 수정

③ 한 벌 물품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과 구성물품 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상호간에 관련 디자인등록출원이 인정되는 경우가 없다. 한 벌의 물품과 그 구성물품은 다물품과 일물품 관계에 해당하므로 유사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. 따라서, **옳지 않은** 지문이다.

진도별 기출 89

해설 ④을 아래와 같이 수정

④ 이 경우 당해 도면에 포함된 디자인은 자전거용 페달을 도시한 것으로, 이는 거래통념상 "자전거용 페달"로 특정되어야 한다. 그럼에도,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란에는 "자전거"라고 기재되어 있는바, 제40조 **제2항**을 만족하지 못한다.

진도별 기출 98

지문 ②를 아래와 같이 수정

② 甲의 디자인등록출원 중 일부 디자인**에만**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전체가 거절결정되나, 적법하게 등록된 이후에는 각 디자인마다 디자인권이 발생하며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.

진도별 기출 167

해설 ③을 아래와 같이 수정

③ 제115조 제2항 제2호

진도별 기출 189

지문 ⑤를 아래와 같이 수정

⑤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이 공지디자인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어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.

모의고사 5회 10번

정답 및 해설을 아래 내용으로 모두 교체

정답) ⑤

해설) ①②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받을 수 없다(35조2항). 이는 무효사유이기도 하다(121조1항). ③ 이러한 제한은 없다. ④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이 등록된 후 기본디자인만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소멸되더라도 관련디자인은 소멸하지 않으므로, 관련디자인은 기본디자인의 존속기간의 만료일까지 종속하여 기본디자인과 관련디자인의 존속기간이 다른 날짜에 종료하는 경우가 있다. ⑤ 관련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당해 관련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제3자의 선출원이 있는 경우라도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. 즉,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서 당해 기본디자인의 출원일 이후 출원된 제3자의 선출원디자인은 신규성 또는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되는 바, 이 경우 제3자의 선출원디자인은 선출원의 지위가 없으므로(46조3항), 이 경우 당해 관련디자인과 유사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.

끝.